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270
----------	-----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1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남진삼, 김광성 의원

## 1. 제안이유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제6조)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안 제7조)
- 지원중지, 환수조치(안 제8조 ~ 제9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3. 28.~ 2024. 4. 8., 아래표 참조

원안(의회)	수정안(도시과)	검토 결과-부분수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u>평창군에 정착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u>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원안유지) ○ 안 제5조 관련, 국토부 사업의 청년 기준은 19세~34세로 해당 조례안의 청년 기준인 18세~49세보다 대상이 한정적임. 나이 기준의 조정없이 대상을 가구로 확대할 시 대상이 광범위하며, 부부가구 비하여 주거지원 혜택이 적은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실효성있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의 지원대상 기준을 유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원대상) ① 1. <u>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u>	제5조(지원대상) ① 1. <u>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일 것</u>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기준 준용	
제6조(지원 제외 대상) 1.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 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u>주거자금으로</u>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u>군수가 정하는 기준</u>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 제외 대상) 1. 「 <u>주거급여법</u>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 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u>해당용도로</u>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u>군수가 정하는 기준</u>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견참조) ○ 안 제6조제3호와 제5호는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여 자구를 수정함 -제3호: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5호: 주거자금으로 ⇨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u>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퍼센트로</u> 하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2회 분할하여 지급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u>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u>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p>② 지원금은 최대 <u>3년까지</u>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u>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원금은 최대 <u>2년까지</u>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에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지원할 수 있다.</p>	<p>(수용)</p> <p>○ 안 제6조제1호 관련, 중복지원 및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수급권 제외 사안에 관하여 사업 시행 시 집행부에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수용함</p>
<p>제8조(지원중지) ①</p> <p>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u>제2조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u></p> <p>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u>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제8조(지원중지) ①</p> <p>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u>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u></p> <p>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u>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u></p>	<p>○ 그 외 안에 대하여 집행부 수정안을 수용함</p>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2.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 임대주택의 면적, 대출금액 상한,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
4.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중도 상환하여 이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지원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주 거 기 본 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 사업시행 시 집행부에서 계획중인 연간 지원대상자 수는 20~30명으로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연락처	(033) 330 -2504